# 방 송 통 신 위 원 회
#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19 - 57 - 299호

**안 건 명** 통신사 영업점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이사**

**의 결 일** 2019. 11. 22.

## 주 문

1.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계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는 안전한 암호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1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 이　　유

### Ⅰ. 기초 사실

(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판매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받은 사업자로,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최근 3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 대표이사 | 설립일자 | 자본금 | 주요서비스 | 종업원 수('18.10.10. 기준) |
|---|---|---|---|---|
| | | | | |

<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평 균 |
|---|---|---|---|---|
| 매출액 | | | | |

※ 매출액 :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 Ⅱ. 사실조사 결과

### 1. 조사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원신고 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하였고, 피심인에 대한 현장조사(2018. 10. 10.)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의 암호화**{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암호화}**를 하지 아니한 행위**

피심인은 2017. 1.부터 2018. 10.까지 이동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 총 691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엑셀파일 형태로 매장내 PC에 보관한 사실이 있다.

< 개인정보 실태점검 도구 점검 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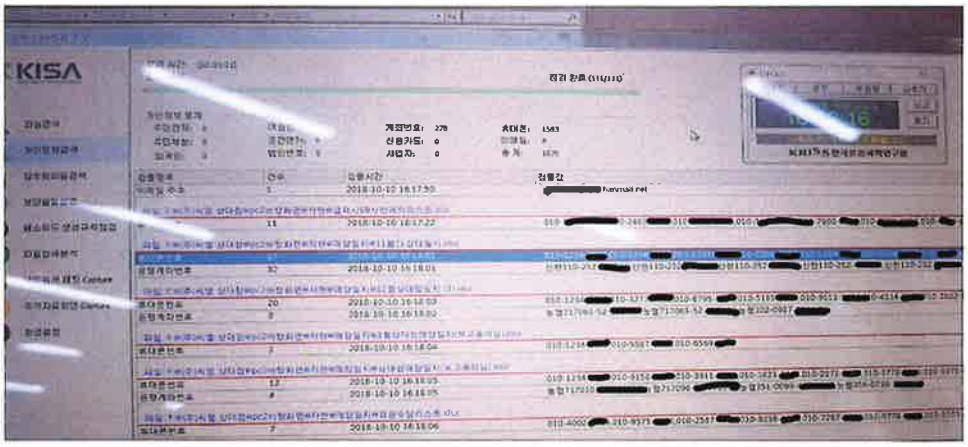

**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중 목적을 달성한 경우}**하지 아니한 행위**

피심인은 2017. 1.부터 2018. 10.까지 가입이 완료된 이동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 총 691건을 파기하지 않고 매장내 PC에 보관한 사실이 있다.

**다.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 5. 3.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19. 5. 20. 의견을 제출하였다.

## Ⅲ. 위법성 판단

###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제4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및 바이오정보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제2호)',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제4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5조제6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3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6조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계좌번호 등 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해설서'는 고시 제6조제2항에 대해 "개인정보 유·노출 시에 2차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계좌번호 등에 대해서는 안전한 알고리듬(128비트 이상)으로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제4항에 대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안전한 암호알고리듬이 탑재된 암호화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거나 개인정보의 저장형태가 오피스 파일 형태일 때에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암호 설정 기능을 활용하고, MS Windows 등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암호화 기능을 활용"하도록 해설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제1항 단서는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는 법 제29조제1항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 위탁 시에도 위탁 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정해 파기 사유가 발생하면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의 암호화**{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암호화}**를 하지 아니한 행위**

피심인이 유·무선 가입자의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691건을 안전한 암호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지 않고 엑셀파일 형태로 저장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4호(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중 암호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2호·제4호, 고시 제6조제2항·제4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중 목적을 달성한 경우}**하지 아니한 행위**

피심인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처리 위탁받은 통신서비스 판매 및 가입이 완료되어 수집·이용 목적이 완료된 이용자 개인정보 691건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 중 목적을 달성한 경우)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 사업자명 | 위반 내용 | 법령 근거 | | |
|---|---|---|---|---|
| | | 법률 | 시행령 | 세부내용(고시 등) |
| | 암호화 | §28①4호 | §15④2·4호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 이용자의 계좌번호 등에 대해 안전한 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행위(고시§6②·④) |
| | 미파기 | §29①1호 | |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컴퓨터 등에 보관한 행위 |

## Ⅳ. 시정조치 명령

### 1. 시정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계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는 안전한 암호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V.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제1항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9] 및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과태료인 1,000만원을 적용한다.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 | |
|---|---|---|---|---|
| | | 1회 | 2회 | 3회 이상 |
| 너. 법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6조 제1항제3호 | 1,000 | 2,000 | 3,000 |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제공 등 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는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 환경, ▲사업규모와 자금사정, ▲개인(위치)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는다.

< 과태료 산출내역 >

| 위반조문 | 기준금액 | 가중 | 감경 | 최종 과태료 |
|---|---|---|---|---|
| §28①4호 | 1,000만원 | 없음 | 없음 | **1,000만원** |
| 계 | | | | **1,000만원** |

다.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Ⅵ. 조사결과 수사기관 이첩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에게 동의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73조제1의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조사당시까지 수집·이용 목적 등을 달성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73조제1의2호에 해당되어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이첩한다.

## Ⅶ. 결론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시정명령) 및 제76조제1항제3호(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9년 11월 22일**

위 원 장 한 상 혁 (인)

부위원장 김 석 진 (인)

위 원 허 욱 (인)

위 원 표 철 수 (인)

위 원 김 창 룡 (인)